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명칭과 설치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함(안 제5조의2).
-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라. 기금재정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6. 9. 29~10. 1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등”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위해 김보성 제5대 대전광역시장이 기탁한 현금 또는 현물과 그 운용수익으로 대전광역시 보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5조제1항중 “기탁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보성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후생복지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후생복지 담당사무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회의 구성) ①장학회에 회장 1인, 감사 1인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회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과장이 된다.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2호, 제10조제3호,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년2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년2회”를 “연 1회 이상”으로, “배학기”를 “학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1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4조중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보성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용어의 정의)</u> 공무원과 공무원자녀등”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이하 “시청”이라 한다)소속공무원과 공무원 자녀 등을 말한다.</p>	<p><u>제3조(정의)</u>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등”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p>
<p><u>제4조(기금의 조성)</u> ① 장학회의 기금은 김보성 제5대 대전광역시장이 기탁한 현금 또는 현물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p> <p>② (생략)</p>	<p><u>제4조(기금의 조성)</u> ①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위해 김보성 제5대 대전광역시장이 기탁한 현금 또는 현물과 그 운용수익으로 대전광역시 보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5조(기금의 관리)</u> ① 기탁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현물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운용하되 본 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처분할 수 없다.</p> <p>② (생략) 〈신설〉</p>	<p><u>제5조(기금의 관리)</u> ①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 대전광역시 보성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기금관리공무원)</u>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후생복지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후생복지 담당사무관 <p><u>제6조(장학회의 구성)</u> ① 장학회에 회장 1인, 감사 1인과 위원회를 둔다.</p>
	<p><u>제6조(장학회의 구성)</u> ① 장학회에 회장 1인, 감사 1인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회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장이 임명하는 실 국장과 2명이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회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p>	<p>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p>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회의) ①<u>위원회</u>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②정기회는 <u>년2회</u>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p>③ (생 략)</p>	<p>제8조(회의) ①<u>심의위원회</u>-----</p> <p>-----</p> <p>②-----<u>연 1회</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감사)</p> <p>① - ② (생 략)</p> <p>1. (생 략)</p> <p>2. <u>위원회</u>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p>	<p>제9조(감사)</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심의위원회</u>-----</p> <p>-----</p>
<p>제10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는 전문대학이상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기타 공무원 또는 그 자녀가 아닌 자로서 <u>위원회</u>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10조(장학금 지급대상) -----</p> <p>-----</p> <p><u>각 호의 어느 하나</u>-----</p> <p>1. - 2. (현행과 같음)</p> <p>3.-----</p> <p><u>심의위원회</u>-----</p> <p>-----</p>
<p>제11조(장학생의 선발) ①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형편에 따라 <u>위원회</u>에서 결정한다.</p> <p>② (생 략)</p> <p>③공무원자녀 등의 장학생 선발은 <u>별표 1</u>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다.</p> <p>④ (생 략)</p>	<p>제11조(장학생의 선발) ①-----</p> <p>-----</p> <p>---<u>심의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별표 1</u>-----</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지급액은 기금의 운용재원범위안에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u>위원회</u>에서 결정한다.</p> <p>② (생 략)</p>	<p>제12조(장학금의 지급) ①-----</p> <p>-----</p> <p>----<u>심의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2005.8.4)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12.28)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2006.10 의회의결)

제8조(기금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6년 11월 7일
3. 상정일자 :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7)
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명칭과 설치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함(안 제5조의2).
-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라. 기금재정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한봉전)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안 제4조(기금의 조성)에 있어 조의 내용이 기금을 조성하여 보성장학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내용별첨)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6
----------	----

제안연월일 : 2006. 12.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내용에 맞는 조 제목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수정함(조례안 제4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4조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장 학회의 기금은 김보성 제5대 대전광역시장이 기탁한 현금 또는 현물 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 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장 학회는 장학사업을 위 해 김보성 제5대 대전 광역시장이 기탁한 현 금 또는 현물과 그 운 용수익으로 대전광역시 보성장학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 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등)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